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 지명과정 및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

1999년 9월 16일자로 이루어진 대통령의 신임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의 지명은 내용에 있어서 뿐 아니라, 그 지명의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참여와 판단의 기회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첫째,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명하면서 그 인선의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지명행위와 관련한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하였다. 통상적으로 일반의 하급공무원의 임용과정도 철저한 절차적 통제와 공식적 평가과정이 존재하고 이를 법제로써 규율함으로써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법집행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장과 국가기강확립의 대임을 맡게 되는 감사원장의 지명행위에 있어서는 이러한 절차 및 평가과정의 공식적 통제는 민주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이념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지명행위는 대통령이 누구로부터 어떠한 자료와 평가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각각의 보고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이루어져 이러한 헌법요청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둘째, 인선의 대상이 되는 인력pool의 범위와 그 인선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이 지명행위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판단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을 인선하면서 고려대상으로 삼은 후보자의 범위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하였고, 또 그들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여과하였는지 그리고 그 후보자범위와 평가기준의 결정이 어떠한 과정에서 결정되었으며,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지표나 목표와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이 전혀 알 기회가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국민들로서는 이번의 지명행위가 참으로 현명한 것인지 아니면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조차도 판단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셋째, 지명행위와 국회의 동의절차간의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어 이번의 지명행위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특히 이번의 인선은 현직자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기만료 내지는 정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그 시기가 예정되어 있고 또 정기국회가 개최되면서 의사일정이 미리 잡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절차를 불과 나흘 앞두고 그것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끼고 발표함으로써 지명자에 대하여 대중들이 건전한 토

론과 평가를 통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이로써 국회의 임명동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의도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참여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이자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대의제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도 어긋나는 비민주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릇,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골격에 해당하는 법과 정의를 대표하는 중심적인 국가기관이며 따라서 그의 임명과정은 모든 국민들의 건전한 토론과 진솔한 평가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개혁과 민주화를 지향한다고 하는 현정권이 나아가야 할 국정의 지표이며 이 점에서 금번의 지명행위는 심히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이러한 비민주적 처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의 진지한 관심과 참여속에서 주요공직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객관적인 인사청문회를 하루바삐 도입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그들의 대표자를 실질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여야 함을 재삼 강조해 두는 바이다. 또한 향후 진행될 국회의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 임명동의절차에서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고 국익에 봉사하여야 하는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민들의 의사와 의지의 향배를 보다 철저하고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부합하는 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이종남 신임 감사원장 지명자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 사법감시센터

1999. 9. 17

이종남 신임 감사원장 지명자는 감사원장에 적절치 않은 인물로 우리는 그의 신임감사원장 지명을 반대하며 국회 동의에서 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한다.

- 이 지명자는 조세전문가이자 경제비리특수수사 전문가로서 감사원장에 필요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고 감사업무에 필요한 업무 추진력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권력의 양지를 좇아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의 편에 서서 중요한 보직을 맡아 구정권에 기여하는 한편, 권력의 외풍에 따라 수서비리사건을 비롯한 중요한 권력형 경제비리 수사를 축소·폐했던 전력 등으로 볼 때,
- 전문적 식견과 업무추진력을 바르게 사용할 정치적 중립성과 엄정한 직무수행의지, 개혁적 소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인물로 평가된다.

최종영 신임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999. 9. 18

최종영 신임대법원장 지명자는 국민의 사법권을 수호할 최선의 대법원장을 임명하지 않은 점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최지명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76년의 재판기피신청 수락으로 볼 때 불이익을 감수하고 소신을 펴던 점은 민주적 소신에 대한 그의 단면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법원장으로서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법치적 위기의 상황에서 헌법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 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명확치 않다.
- 사법개혁에 대한 그의 소신은 또한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 당시 사법개혁을 주도했다고는 하나 그것은 사법개혁을 국민의 입장에서보다는 법원 행정개혁의 차원에서만 접근했다는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현재 막중한 사법개혁을 과연 법무행정이나 법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해나갈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
- 그의 법률적 식견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법 적용이라는 측면

에서는 일정한 평가를 할 수 있으나, 그것은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충실한 적용에 그치고 있어 시민의 기본권이나 권리 확대라는 점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사평가 의견서 : 이종남 신임 감사원장 지명자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 사법감시센터

지난 9월 16일 김대중대통령은 한승헌 현 감사원장 후임 감사원장으로 이종남 변호사를 지명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와 사법감시센터는 공공개혁의 견인차가 되어야 할 감사원장의 임명과정이 전국민이 동의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개적인 논의속에 진행되어야한다는 판단아래 이종남 신임 감사원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평가 의견을 작성하였다.

본 의견서는 1) 감사원장 인선의 기준 2) 이종남 신임 감사원장 지명자에 대한 평가 3) 총평의 순서로 작성되었다.

1. 감사원장 인선의 기준

■ 정치적 중립성과 공평무사한 직무수행

감사원장은 권력의 외풍에 좌우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소신있게 일을 처리하는 강직하고 청렴한 인품의 소유자여야 한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철저하고도 엄정한 회계감사를 실시해야할 감사원의 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확인된 인사여야 한다.

■ 업무 추진력 및 빈틈없는 일처리

공공혁신의 견인차가 되어야 할 감사원은 적은 인력으로 감사원에 부여된 방대한 영역의 공공 감사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공직사회의 기풍쇄신을 주도해야 한다. 이러한 과중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감사원장이 포착한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고 확실하게 매듭짓는 추진력과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 전문적 식견

감사원 업무의 특성상 감사원의 수장은 회계감사나 공직비리수사와 관련된 전문적 식견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하직원의 지휘통솔,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 이러한 자질은 필수적이다.

■ 민주적 개혁적 소신

부정부패 척결과 공공혁신에는 민주적 소신이 필요하며 이룰 때만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정부 감사원장은 그 경력에 있어 국민 앞에 떳떳한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인물로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감사원 임직원들과 피검기관의 구성원들이 감사행위를 받아들이고 인정할만한 모범적인 인물이어야 한다.

감사원장은 위의 4가지 기준을 고루 충족한 인물로 임명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정치적 독립성과 엄정한 직무수행은 감사원 부서의 존립근거와 직결되는 기준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감사원의 원훈이 공명정대인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인사평가

이종남 신임 감사원장 지명자 약력

부인 백지선 (白志先, 54) 씨와 2남1녀. ▶서울 (63) ▶덕수상고고려
대 법대 ▶고시12회 ▶부산지검 통영지청장 ▶대검 특별수사부 제4과장 ▶
대검 중수부장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미 하버드대 법대 객원교수 ▶
법무부장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1)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엄정성

○ 이종남 지명자는 1980년 서울지검 부장검사로 재직시, 10.26직후 국가보위비상대책 위원회에 가담, 계엄사합동수사부, 입법회의에 파견근무를 함으로써 '쿠데타적 사건'에 부역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12·12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조사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 이종남 지명자는 5,6공시절 초대 중수부장, 검찰총장, 법무장관을 역임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장본인으로서의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

- 81년 신정권 창출 직후 초대 중수부장으로 취임하였다. 그 중수부는 검찰정치개입

의 상징으로 지목되어 지금 존폐의 기로에 있다.

- 85년부터 법무부차관에 기용되었고 86년 초 발생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축소수사에 보고책임, 지휘책임이 있다.
- 6월항쟁 직전인 87년 6월 1일 검찰총장에 취임, 88년 11월까지 정권교체 국면에서 사정기관의 총수역할을 수행했다. 같은 시기의 대선부정, 5공비리 관련 수사는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다.
- 이 지명자는 현직을 사임한 지 1년 3개월 만인 90년 3월 법무부장관에 취임했다. 이 시기는 민자당 합당이 이루어지고 정경유착 사건과 시국사건이 빈발하던 시기로, 법무부장관 재직 동안 일어났던 수서비리사건, 유서대필사건 등의 정치적 수사에 지휘책임이 있다.
- 이 지명자는 대체로 권력교체 혹은 정치개편기의 민감한 시기에 중요한 보직을 맡아 구정권에 기여했다.

○ 이지명자의 검찰총장 재임시절(87년 6월 1일 - 88년 11월), 5공수사와 관련해 당시 전경환(全敬煥)씨를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씨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강원일 당시 중수부장은 이에 반발해 일주일간 출근을 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노량진수산시장비리 사건을 수사한 일선검사였던 홍준표(洪準杓) 전의원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수뇌부로부터 내사종결 지시와 피의자를 귀가조치할 것 등 수사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업무추진력

○ 이종남 지명자에 대해서 대체로 “일처리에 빈틈이 없다.”는 점을 평가하고 있다.

○ 법무장관 재직 시절 ‘범죄와의 전쟁’을 주도했다. 범죄와의 전쟁 1년을 맞아 법무부가 집계한 자료는, 91년 1월에서 7월까지 7개월간 총81만3천3백87명을 입건, 이중 기소가 30만9천5백75건, 불기소31만5천2백66건, 수사중인 사건이 4만5천8백99건에 이르고 있다고 집계하고 있다.

- ‘범죄와의 전쟁’은 90년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5개월 간 조직폭력배 132개파, 1036명을 검거하는 등 조직폭력을 한풀 꺾는 데는 기여했으나 무리한 정책집행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화성연쇄살인사건, 이

영우유괴살인사건, 이근안고문경찰관 사건, 대구어린이실종사건 등 굵직한 민생치안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체감도가 떨어졌다는 평가도 받았다.

3) 전문적 식견

- 이종남 지명자는 검사재직시 '세법상부정소득에관한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고 공인회계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국제조세협회 이사장, 공인회계사 회장을 역임했다. 또 미 하버드대 법대 객원교수를 역임하고 '조세법 연구'를 출간하는 등 회계감사에 필요한 충분한 법률 실무와 이론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 이 지명자는 경제범죄관련 특수수사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경력을 갖고 있다. 초대 대검 중수부장을 지내면서 이철희 (李哲熙) - 장영자 (張玲子) 사건을 총지휘했고 박동명 (朴東明) 사건, 여수밀수사건, 백화양조 탈세사건 등을 처리하여 경제수사의 1인자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4) 민주적 개혁적 소신

- "원칙을 지키고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원만한 성격의 인물"이라는 청와대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지명자는 법무장관 재임 중이었던 91년 2월 6공 최대비리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수서택지분양비리사건을 축소은폐처리함으로써 그의 전문적 능력에 비해 개혁적 소신이 취약함을 드러냈다. 수서비리 사건의 미봉처리는 정태수 한보회장의 재기를 가능케 했고 이는 97년의 2차 한보사건으로 이어져 결국 IMF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 이 지명자의 법무부장관 취임 직후인 90년 5월 감사원에 근무하던 이문옥 감사관이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부당한 감사중단"과 관련된 내부비리를 폭로한 것에 대해 검찰은 감사원 및 재벌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는 14일간의 단기간 조사를 거쳐 무혐의 처리한 반면 제보자인 이 감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구속했다. 나중에 법원판결로 이감사관은 무죄판결을 받았고 복직을 했다. 이를 통해 볼 때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감사활동을 추구해야 하는 감사원장으로서 부적합함을 알 수 있다.

- 경제비리, 특히 토지투기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전세값 상승의 여파로 가장들의 자살이 수백명에 이르렀던 90-91년 정황 상 위의 두가지 핵심적인 경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무부의 축소은폐처리는 당시 이 사건에 대한 지휘책임을 지닌 법무부장관이 개혁적 소신을 바르게 견지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예라 할 것이다.

3. 총평

이종남 감사원장 지명자는 감사원장에 적합지 않은 인물로서 우리는 그의 감사원장 지명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 지명자는 조세전문가이자 경제비리특수수사 전문가로서 감사원장에 필요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고 감사업무에 필요한 업무 추진력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양지를 좇아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의 편에 서서 중요한 보직을 맡아 구정권에 기여하는 한편, 권력의 외풍에 따라 수서비리사건을 비롯한 중요한 권력형 경제비리 수사를 축소은폐했던 전력 등으로 볼 때, 전문적 식견과 업무추진력을 바르게 사용할 정치적 중립성과 엄정한 직무수행의지, 개혁적 소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인물로 평가된다.

최종영 대법원장지명자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1. 대법원장의 인선기준

대법원장은 법원의 대표가 아니라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대표이다. 법원이라는 관료 조직체의 수장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권의 장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법원장은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온 인물이어야 한다.

참여연대에서 조사한 바람직한 대법원장 선정기준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도 민주적 소신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지적되었고 이어 법률적 식견 및 인품이 다음을 차지하며, 대법원장의 자질로서 사법행정능력이나 법관으로서의 경험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사법 현실에 대한 반증으로서 반민주적, 반법치적 세력에 맞서 민주적 소신을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대법원장의 자질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대법원장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수호에 있어 보다 신념을 갖고, 잘못된 권력의 행사로 헌법적 질서와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항상 법치의 편에 확고히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사법권이 법조인의 이해나 국가권력이 아닌 국민적 입장과 이해의 차원에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역할이요,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는 21세기를 앞둔 현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다.

2. 인사평가

최종영 신임 대법원장 지명자의 약력

부인 교수경 여사(57)와의 사이에 1남2녀 ▶강원 강릉(60) ▶강릉상고,서울대법대 ▶고시13회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서울민사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중앙선관위원장

1) 민주적 소신

▷'3·1절 명동성당 구국선언사건' 관련

최지명자는 유신 시절인 76년, 서울고법 판사 재직 시 '3·1절 명동성당 구국선언사건' 때 기소됐던 현 김대중대통령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 때문에 대구고법으로 전보되어 이후 상당기간을 한직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했다. 이 사건은 그의 민주적 소신을 짐작 할 수 있게 한다.

▷사법개혁에 관한 소신

언론에 의하면, 김대통령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고, 현재 진행 중인 사법개혁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최지명자가 법원행정처장 때 사법개혁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하여 인선을 한 것으로 드러난다. 즉 최지명자를 지명하게 된 주요한 인선기준이 법원행정처장 재임 당시의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구성 등 사법개혁을 주도했던 경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최지명자의 인선의 적절성은 법원행정처장 재임 당시 추진했던 사법개혁의 공과를 포함, 그동안 사법개혁에 대해 그가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 명확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91년, 서울민사지법원장 재직 시 사건적체 해소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에 관심을 갖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집중심리제를 도입하는 등 재판제도 개선에 관심을 갖었다. 특히 등기소의 급행료 부조리 척결을 위한 등기소 업무를 개선하기도 했다.

93년, 최지명자는 사법사상 최초로 법원 내부의 판사들 사이에서 정치판사, 부정축재 판사의 인적 청산과 사법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일어났던 제3차 사법부파동의 와중에서 윤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되었다. 법원행정처장 임명 직후 단행되었던 인사조치에서 판사들이 요구했던 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대신 그는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 제도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지명자는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 24개항의 사법제도개혁과제를 입안·추진했다. 사발위를 통해 예산안요구권, 영장실질심사제도입, 법관직급제 부분폐지, 예비판

사제도 도입, 시군법원설치 등 사법개혁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당시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성 등 보다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엽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의 제도개혁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당시 법원주도의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었다기 보다 법원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법원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혁에 머무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최지명자는 재조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사법개혁을 국민에게 사법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 법원 내부의 개혁의 차원에서만 접근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서비스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소극적이고 보신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법현실은 사법정의와 사법서비스의 측면에서 우리사회의 가장 낙후한 영역이며, 동시에 스스로의 자정을 기대하기 힘든 비민주적 성역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다. 지난 대전 법조비리파동 이후 법원 내부에서조차 법원의 정치중립성의 필요성이나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화 등의 요구가 제기된 것은 최지명자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사법개혁이 근본적 개혁을 외면했던 결과임과 동시에 법원개혁의 불철저성을 반증한다.

최지명자가 법원행정처장을 맡게되었던 당시에 비해 현재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필요의 수위가 한계에 도달해 있다는 점에서 개혁의 시급성과 절박함은 더한 상황에서 최지명자의 인선이 최선이 아니라는 의구심은 바로 과거 그의 행적으로 비추어 과연 이번 사법개혁과제를 누구의 입장에서 추진하고 얼마나 철저히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부여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현 시대에서 요구되는 사법개혁은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법률소비자의 기본권리 확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 사법제도의 왜곡된 틀 자체를 개혁한다는 혁신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법조계 내부의 기술 실무적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지명자가 현재 진행중인 사법개혁에 있어 법률가 양성제도 및 사법고시 제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재조의 입장이나 법원내부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다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존재한다.

2) 법률적 식견

▷ 우조교 성희롱사건

98년 최지명자는 대법관 주심으로서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에 대해 우조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동안 개인적인 문제로 도외시했던 성희롱을 법적 문제로 끌어 올렸다. 특히 당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이 판결은 법조계 내부에서 "성희롱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여성계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하나의 범죄임을 규명하고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였다는 점에서 이판결을 98년 여권신장에 기여한 최고의 판결로 선정했고, 최지명자는 여성단체연합회가 선정한 '여성권의 발전의 디딤돌' 상을 수상했다.

▷가야개발 골프장 승인 취소소송

97년 최지명자는 대법관 주심으로서 가야개발의 골프장 승인취소 소송에서 "해인사측이 반발한다는 이유 등으로 가야산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문화체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서 '문체부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연보호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국민정서와 자연보호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취소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판결은 법원칙적인 차원에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행정처분의 자체의 적법성을 환경권이나 자연보호와 같은 공익에 우선시 한 판결이다. 더구나 이 사건에 대해 대선 정국에서 불교계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판결자체를 계속 미루다가 대통령 선거 직후에 내림으로써, 판결시기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 서울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지명자는 서울시 선관위원장으로 91년 지방자치제 선거와 92년 14대 총선을 고나리한 바 있고, 97년 중앙선관의위원장직을 맡아 대통령선거를 관리했다.

97년 중앙선관위원장 재직 시, 노동관계법 개정을 이유로 들어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9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총, 전교조 등이 법외노조라는 점을 들어 이들의 선거운동이 불법으로 규정했다.

3) 도덕성 및 인품

비교적 원만한 대인관계라는 것이 중론이며, 사생활이나 도덕성에 있어 큰 흠결을 찾을 수 없다. 대체로 윗사람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지만 아랫사람에 대한 포용력이나 배려에 있어서는 인색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3. 총평

76년의 재판기피신청 수락으로 볼 때 불이익을 감수하고 소신을 폄되던 점은 민주적 소신에 대한 그의 단면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이렇다 할 민주적 소신을 보여줄 다른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그가 대법원장으로서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법치적 위기의 상황에서 헌법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 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명확치 않다.

또한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 당시 사법개혁을 주도했다고는 하나 그것은 사법개혁을 국민의 입장에서보다는 법원 행정개혁의 차원에서만 접근했다는 한계가 분명하다. 현재 막중한 사법개혁을 과연 법무행정이나 법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해나갈 수 있을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법률적 식견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평하고 원칙적인 법 적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평가를 할 수 있으나, 그것은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충실한 적용에 그치고 있어 시민의 기본권이나 권리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